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통보

1. 공기업지원과-80(2019.1.4), 공기업지원과-242(2019.1.16) 및 공기업지원과-341(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범정부의 경제활력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국고보조 SOC사업 등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통보하오니,
3. 각 시·도에서는 설립 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56.5%)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및 주요사업 관리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주요사업 관리 중점 추진분야를 적극 추진하시고,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사업별 30억이상) 수립결과는 2.22(금)까지 시·도에서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LOBAS 및 BBEMS시스템을 통한 집행을 관리 및 상황판 정보제공* 등 기능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BEMS사용기관의 예산액 및 집행실적 자동연계 기능 구현

붙임 : 2019년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장(재정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 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부)

지방공공기관 예산팀장 최영록 공기업지원과장 전결 02/19 홍삼기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602 (2019.02.19.) 접수 공기업담당관-2216 (2019.2.19.)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88 /전송 044-204-8977 / cym7204@mail.go.kr / 비공개(5)

2019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지침(요약)

□ 추진방향

- (정책기조) 정부에서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
- (경기대응) 대내경기 불안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적 추진 필요
- (추진방향) 최근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상반기 56.5% 설정, SOC,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

□ 목표 및 대상액

- (상반기 목표) 집행 대상액*의 56.5% 집행 (전년도 55.5% 대비 1% 증)
 - 광역 63.5%, 기초 55.5%, 공기업 56.5% ※ 단, 세종, 제주 55.5% 적용
 - * 예산현액 50.4조(당초 46.9 + 이월 3.5) 중 대상액 19.0조(시설비 등 20개과목)의 56.5%(목표액 10.7조)
- (대상과목)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 민간에게 이전되는 수익적 경비와 사업투자성격의 자본적 경비
 - ※ (제외)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예비비, 감가상각비(현금지출 미수반 예산과목) 등

□ 중점 추진 및 개선사항

- 주요 관리사업 중점 추진

① SOC사업 집행 중점 관리, ② 사업별 프로세스(발주, 기성, 준공 등) 세부관리(30억 이상 사업), ③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적용, ④ 국비 실집행 강화 등

- 주요 개선사항

- 신속집행시스템 사용 의무화(7개 기관 실적 공문제출 → BBEMS 실적관리)
- 추경예산 예산현액 반영(BBEMS 사용기관 입력 → 지자체 검토 → 행안부 승인)

□ 향후계획

- 2019년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기관별 목표액 확정) 시달(2.15한)
-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상황 관리(2월~6월), 실적 미흡기관 현장점검(수시)
- 집행실적 최종결과 보고(7월초), 신속집행 유공자 포상 추진(장관 7점, 8월중)

2019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지침

2019. 2.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목 차

I. 2019년도 경제전망	1
II. 재정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III. 세부 추진계획	4
IV.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7
V. 추진일정	8
<참고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 현황	9
<참고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유형별 신속집행 대상예산 현황(I)	10
<참고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유형별 신속집행 대상예산 현황(II)	11
<참고 4> 2019년도 시·도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대상예산 현황	12
<참고 5> 2019년도 지방공기업별 신속집행 대상예산 현황	13
<참고 6>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실적관리 매뉴얼	25

I

2019년도 경제전망

- ① **(대외경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경기침체 요인 확대 속에 3.7% 수준의 상승률 지속 전망(IMF, OECD)
 - 무역분쟁 등으로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 신흥국 중 아르헨티나·터키 등 금융 불안 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 ② **(국내경제)**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에 긍정적이거나, 민간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과 유사한 2.6~2.7% 수준의 성장 전망*
 - * IMF·OECD·KDI : 2.6% 한은 2.7%, 현대研 2.5% 등
 -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성장세 보완 전망
- ③ **(지방재정)** 재정분권 등으로 세입여건 양호, 재정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 (세입)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재정 확충(9조원 수준) 효과 발생,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등 지방세 증가(5.5조원, 7%) 추세
 - (세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8.6조)* 및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 지역일자리·활력 3.5조, 여가·건강활동 1.6조, 생활안전·환경 2.6조 등
- ④ **지방공기업 재정 여건**
 - (수입) 수입여건 다소 불안정, 경기변동, 요금현실화 노력,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지출)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신규사업으로 인한 투자지출 및 안전설비 강화 등으로 지출 수요 지속 증가

II

재정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 ① (정책기조) 정부에서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할 계획
 -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방재정 신속집행도 일자리, SOC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을 강화가 절실한 시점
- ② (경기대응) 대내경기 불안* 및 대외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적 추진 필요
 - * 고용률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新DTI 대출규제 등
 - **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의 개선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무역분쟁 심화,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
- ③ 추진 방향
 - 최근 5년간 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설정(상반기 56.5%)
 - * ('15) 55.0% → ('16) 55.0% → ('17) 55.0% → ('18) 55.5%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 해소 및 적극적 제도 활용

「상반기 56.5% 집행」으로 대내·외 경기 불안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제성장 기여

재정운영 선순환 정착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56.5% 집행

○ (목표액) 대상사업비(18조 9,878억원)의 56.5%인 10조 7,280억원 상반기 집행

※ 광역(63.5%), 기초(55.5%) ※ 단, 세종, 제주 55.5% 적용

<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도 목표액(예상액)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2018년)	46조 9,773억	18조 5,016억	39.4%	10조 2,684억	55.5%
금년도(2019년)	50조 4,080억	18조 9,878억	37.7%	10조 7,280억	56.5%
전년대비	3조 4,307억 (↑7.3%)	4,862억 (↑2.6%)	↓1.7%	4,596억 (↑1.6%)	

- 연중 균등 집행액이 포함된 개발대행사업비(241), 민간위탁금(307-05),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316),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이 산정되는 일부 예산과목(5개)*의 예산현액에 대하여는 일부 하향 조정(△15%)

* 상품매입비, 택지매출원가, 공단용지매출원가, 주택매출원가, 기타용지 매출원가

- 사무용품 사재기 등의 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대상과목에서 제외(지자체 대상과목 일치)
- 자치단체간부담금 대상과목 추가(지자체 대상과목 일치)

○ 월별 신속집행 목표·진도율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누계)	13.6%	25.4%	34.5%	45.8%	56.5%
진도율	24%	45%	61%	81%	100%

Ⅲ

세부 추진계획

1 대상기관 : 총 405개 지방공기업

구분	합계	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소계	공사	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운송
계	405	151	62	89	254	122	102	29	1
광역	70	46	34	12	24	9	9	5	1
기초	335	105	28	77	230	113	93	24	0

※ 기관 신설(4) : 경북 예천군 상·하수도, 경남 고성군 상·하수도 신설(2019.1.1.)

2 신속집행 대상예산 및 목표액

- (대상예산) 원칙적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수익적 경비와 사업투자 성격의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추진
- ※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예비비(집행계획 미수립), 감가상각비(현금지출 미수반) 등의 예산과목은 제외
- 추경예산 예산현액 즉시 반영(로바스 자동반영, BBEMS 별도승인)

○ (목표액) 신속집행 대상액의 56.5%

- 예산현액 = 2019년 본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신속집행 대상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20개 과목)의 예산현액
-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 × 56.5%

3 집행실적 입력 및 관리

- 월별 신속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입력
 - 월별 목표진도율에 따라 세부사업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예산신속집행관리시스템(BBEMS) 사용 기관은 일일 단위로 집행실적 입력
 - ※ 예산회계표준시스템(LOBAS) 사용기관은 별도 집행실적 입력 불필요
- (점검회의)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부진기관 대책 등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 시·도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월1회)
 - 자치단체 : 신속집행 현황 점검(주1회) 및 점검회의 개최(월1회)
 - 지방공기업 : 자체 신속집행 추진단 점검회의 수시 개최

4 주요사업 관리

①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시행

- (내용) 계약체결 前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확인·점검
- (방법) 격주 단위로 지방공기업 30억 이상 사업의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관리 ※ 광역 지자체 50억 이상, 기초 지자체 30억 이상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

사업명	대상액	집행액	프로세스							
			계획수립 수중	행정절차 진행중 (보조금 신청)	계약 진행중	계약체결 (보조사업자 확정)	공사착공 (보조결정)	선금지급 (보조금교부)	준공 지급	애로· 건의 사항
△△사업				√						· ·
○○사업					√					· ·

※ '19. 2월 중순부터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설립 자치단체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신속집행 추진단(지자체, 지방공기업)에서 상황 관리

② 주 단위 「신속집행 현장점검 특별반」 운영(1분기 內)

- (대상) 부진단체 및 지방공기업 30억원 이상 부진사업
- (운영)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점검 특별반 운영
 -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부진단체와 부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집행 관리 및 특별점검 실시(매주 단위)

③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적 적용

※ 공기업지원과 - 242(2019.1.16.,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시행)

- (계약제도) i)긴급입찰 대상인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 마감 5일전), ii)선금은 계약금액의 70%을 이내에 지급(기간 : 14일 이내→3일 이내), iii)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3일) 등

- **(집행제도)** i)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추정 성립 전 사용('19.6.30까지), ii)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30까지 매월 교부→일괄 교부, iii)대가지급기한 단축* 등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 신속집행 추진 성과를 위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④ 부진단체 등 집행관리 집중 점검 및 독려

- **(현장점검)** 평균 집행률 미만 자치단체 현장점검 주기적 실시
- **(점검회의)** 일일단위 실적점검 및 분석, 부진단체 보고회, 각종 회의체,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집행목표 달성 독려 등

⑤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강화

- **(대상사업)**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전체**
 - 지방공기업별 여건에 따라 자체 집행목표율을 설정하여 점검·관리
- **(관리방법)** e-나라도움 집행실적을 자체 점검회의 시 지방공기업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실 집행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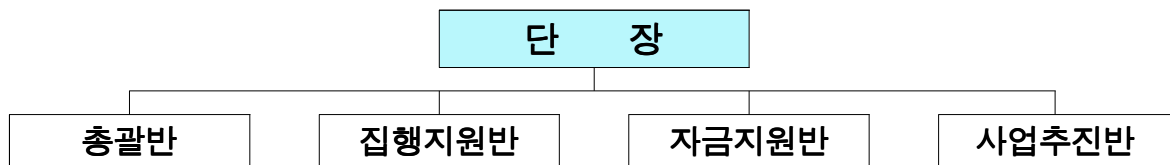
IV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1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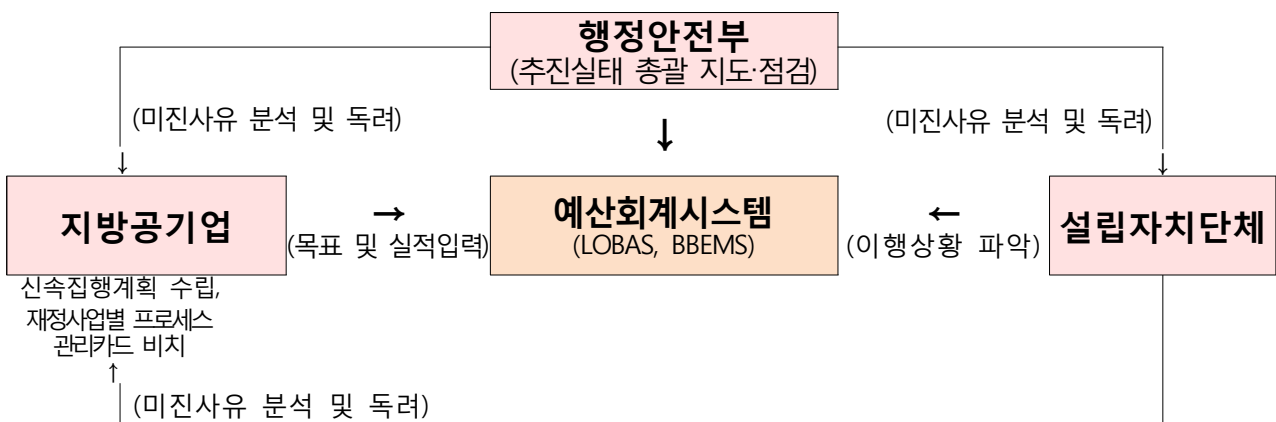
□ 임무 및 역할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지원반」 운영
 - (구성) 반장 : 공기업지원과장, 반원 : 예산팀장
 - (역할) 공기업 집행총괄, 시도별 공기업 실적 점검 및 집행 독려
 - ※ 시·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주1회)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지원 등
- (자치단체) 예산 및 지방공기업 담당부서장 합동으로 「신속집행 추진단」 운영, 산하 지방공기업별 집행상황 점검·지도
 - ※ 시도·시군구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단」에 지방공기업 포함 관리·운영
- (지방공기업)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 및 상황실 운영하여 주요사업 및 재정집행상황 수시 점검



※ 반장 : 분야별 담당 팀장급 이상으로 운영

□ 추진상황 관리체계



- 지방공기업은 재정 신속집행시스템(BBEMS)에 신속집행 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시스템(LOBAS) 사용기관은 자동 연계

2 주기적인 집행실태 점검

- 행안부 또는 각 시·도(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방공기업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예산액 시스템 입력 및 점검('18.1~2월), 추진실적 점검(~'18.6월)
- ※ 필요시 집행 부진기관 대책회의 개최(영상회의 등) 병행

<집행률 점검 서식>

구 분	예산액 (A)	대상액 (B)	목표액 (C)	집행액(D)	집행률 (D/B)	집행 예상(E)	상반기 목표대비 (56.5%-E)
○○상수도					%	%	%
○○공단					%	%	%
○ 집행률 부진 사유 및 목표율 제고 대책 -							

3 추진결과 활용

- 추진실적은 '19년도('18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직영기업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0점
공사.공단	0.3점	0.25점	0.2점	0.15점	0.1점	0점

- 신속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 추진
 - ※ 2018년 : 상반기 평가 - 유공자 7명, 최종평가 - 우수기관 5개

V

추진일정

- 신속집행 실적 일일 입력 : '18. 2. 1.~ (1월 집행실적은 소급 입력)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수립 및 취합 : '18. 2. 22한
-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실태 점검반 편성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18. 2월~